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 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998. 12. 17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8년 11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58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98.12.1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해석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마포구조례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된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마포구 조례에 규정된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1997.8.22. 법률제5351호) 제100조제3항의 개정예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1998.4.1.산업자원부령 제4호) 제26조 별표4에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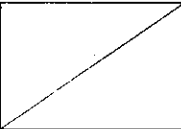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1998.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폐지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마포구조례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던 에너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게된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함.

3. 폐지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97.8.22 법률제5351호) 제100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98.2.2 대통령령제15619호) 제42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98.4.1산업자원부령제4호) 제26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첨부 :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